
권돌 등 8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4. 04.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인 농업분야에 대한 용수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안전한 용수 공급 기반은 미흡한 실정으로 가뭄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 기존 농촌용수 공급시설로는 가뭄시 적기에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뭄상습지에 저수급량이 적어 주변의 농작물 경작지에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여 가뭄상습지역(수리불안전답)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작부 체계를 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계획의 개요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파. 특정지역의 개발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부

1.2.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함

1.2.3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가. 추진경위

- 2023.09.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2024.0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4.03. ~ 04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나. 향후 추진계획

- 2024.0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4.05.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 2024.05. ~ 06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24.0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1.2.4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권돌 등 8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나. 계획기간 : 2023년 ~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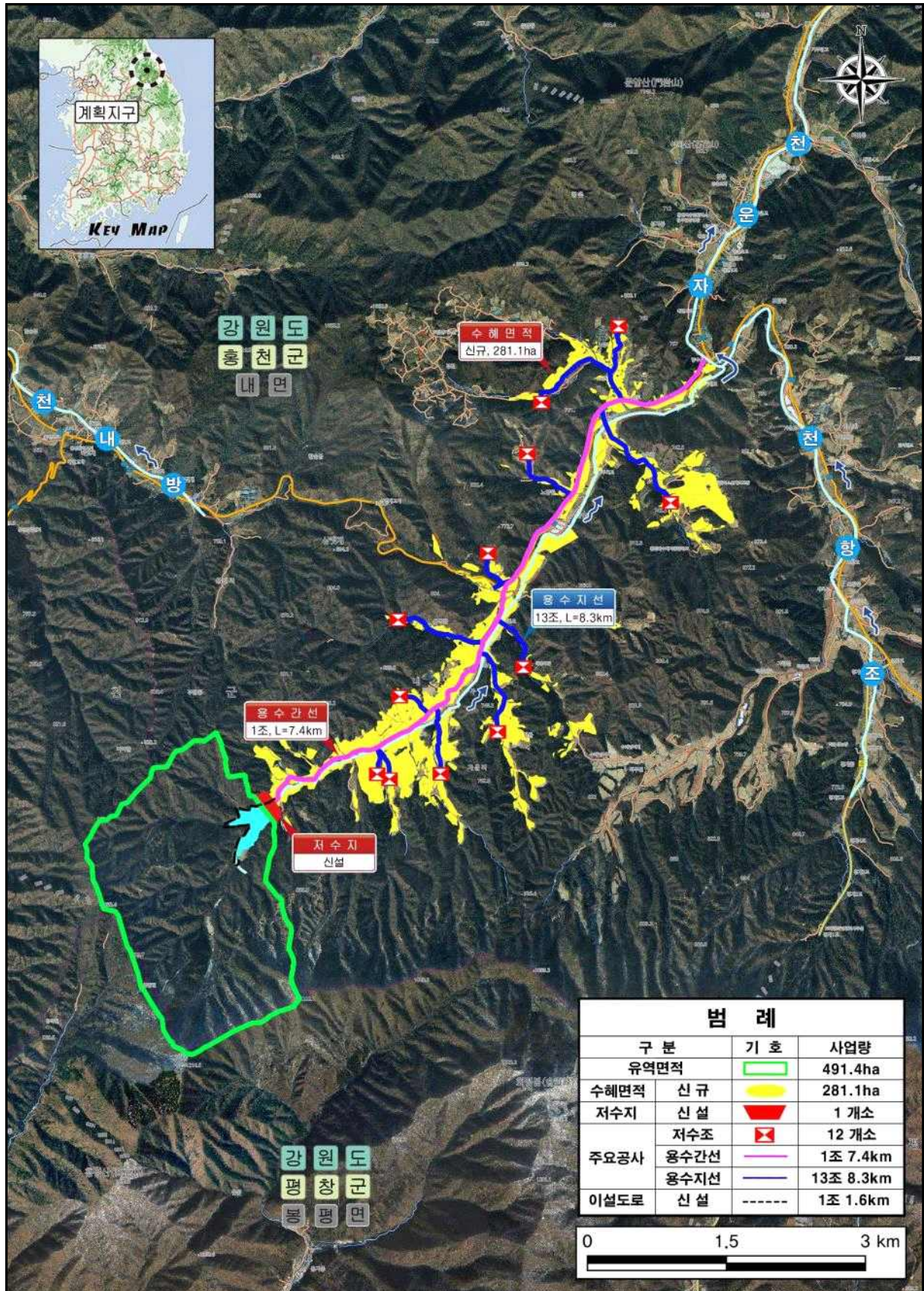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라. 기본계획 수립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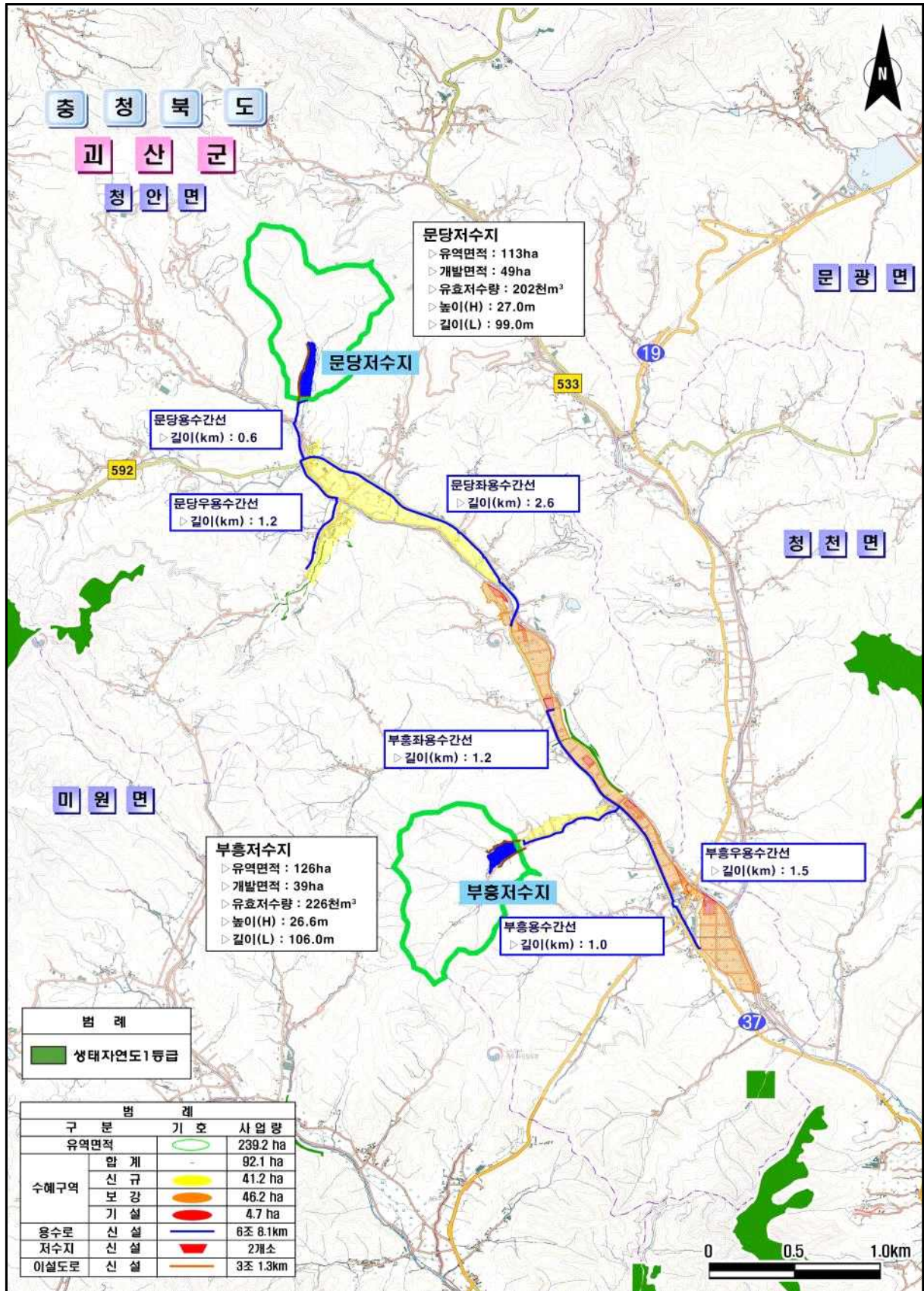
마. 계획지구 위치 및 주요 시설계획

계획명	지구명	위치	주요 시설계획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권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일원	○ 수혜면적 : 281.1ha - 신규 281.1ha ○ 저수지 1개소(신설) ○ 용수로 14조(15.7km) ○ 저수조 12개소 ○ 이설도로 1조 1.6km
	문당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일원	○ 수혜면적 : 92.1ha - 신규 41.2ha, 보강 46.2ha, 기설 4.7ha ○ 저수지 2개소(신설) ○ 용수로 6조(L=8.1km) ○ 이설도로 3조 1.3km
	소이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일원	○ 수혜면적 : 120.28ha - 신규 73.95ha, 보강 26.65ha, 기설 19.68ha ○ 양수장 1개소(신설) ○ 토출수조 1개소 ○ 송수관로 1조(2.1km) ○ 용수관로 14조(10.7km) ○ 용수로(개거) 8조(1.8km)

계획명	지구명	위치	주요 시설계획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황촌이곡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북면 일원	○ 수혜면적 : 407.3ha - 신규 407.3ha ○ 저류지 1개소(신설) ○ 양수장 2개소(신설) ○ 토출수조 1개소(기설치) ○ 송수관로 1조(1.5km) ○ 용수로 12조(14.0km)
	원승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일원	○ 수혜면적 : 72.0ha - 신규 72.0ha ○ 저수지 1개소(신설) ○ 용수로 10조(9.1km) ○ 토출수조 13개소(신설) ○ 이설도로 1조 0.95km
	금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일원	○ 수혜면적 : 194.0ha - 신규 136.2ha, 보강 34.3ha, 기설 23.5ha ○ 저수지 1개소(보강) ○ 양수장 1개소(신설) ○ 송수관로 2조(4.92km) ○ 용수로 7조(7.66km) ○ 토출수조 2개소 ○ 이설도로 1조 2.1km
	산장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장천면, 해평면 일원	○ 수혜면적 : 309.9ha -신규 43.7ha, 보강 183.7ha, 기설 82.5ha ○ 양수장 4개소(신설, 교체(재설치)) ○ 토출수조 2개소(신설) ○ 송수관로 6조(L=16.0km) ○ 용수로 6조(L=11.2km)
	영화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청통면, 화산면 일원	○ 수혜면적 : 374.7ha -신규 150.5ha, 보강 66.6ha, 기설 157.6ha ○ 저수지 1개소(보강) ○ 양수장 1개소(신설) ○ 송수관로 1조(2.3km) ○ 용수로 5조(10.1km) ○ 이설도로 2조 0.87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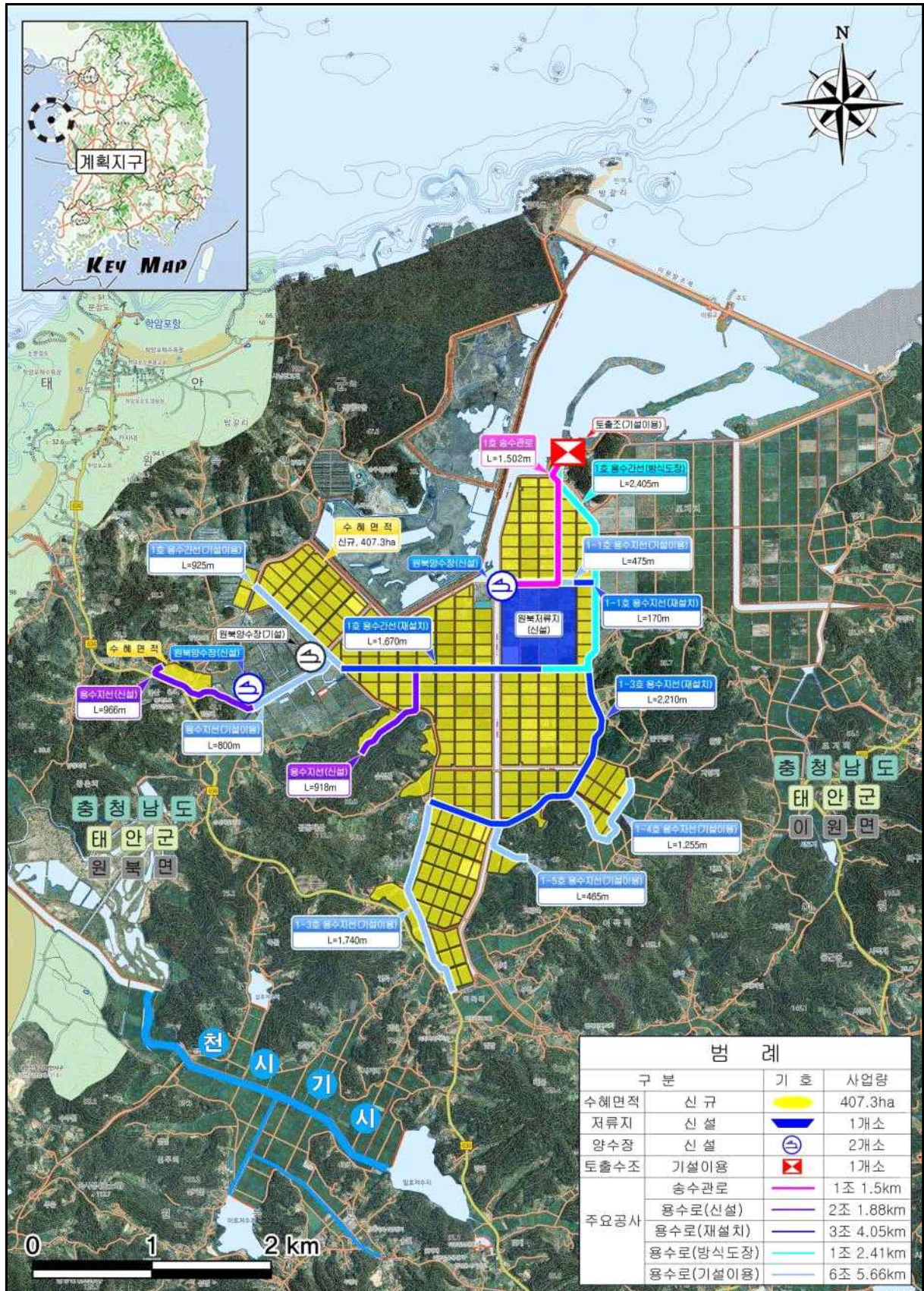
(그림 1.2-1) 계획지구 위치도(권돌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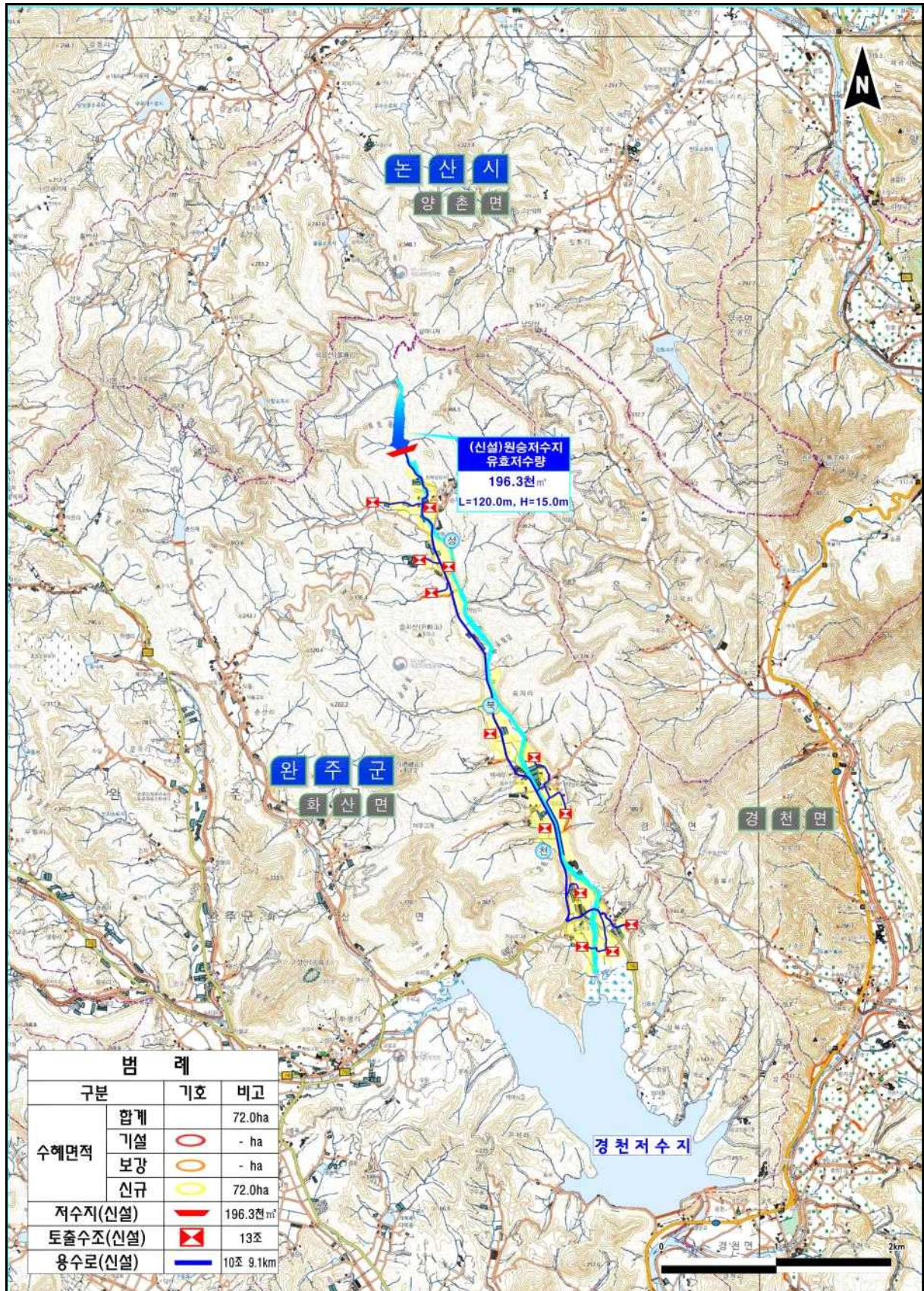
(그림 1.2-2) 계획지구 위치도(문당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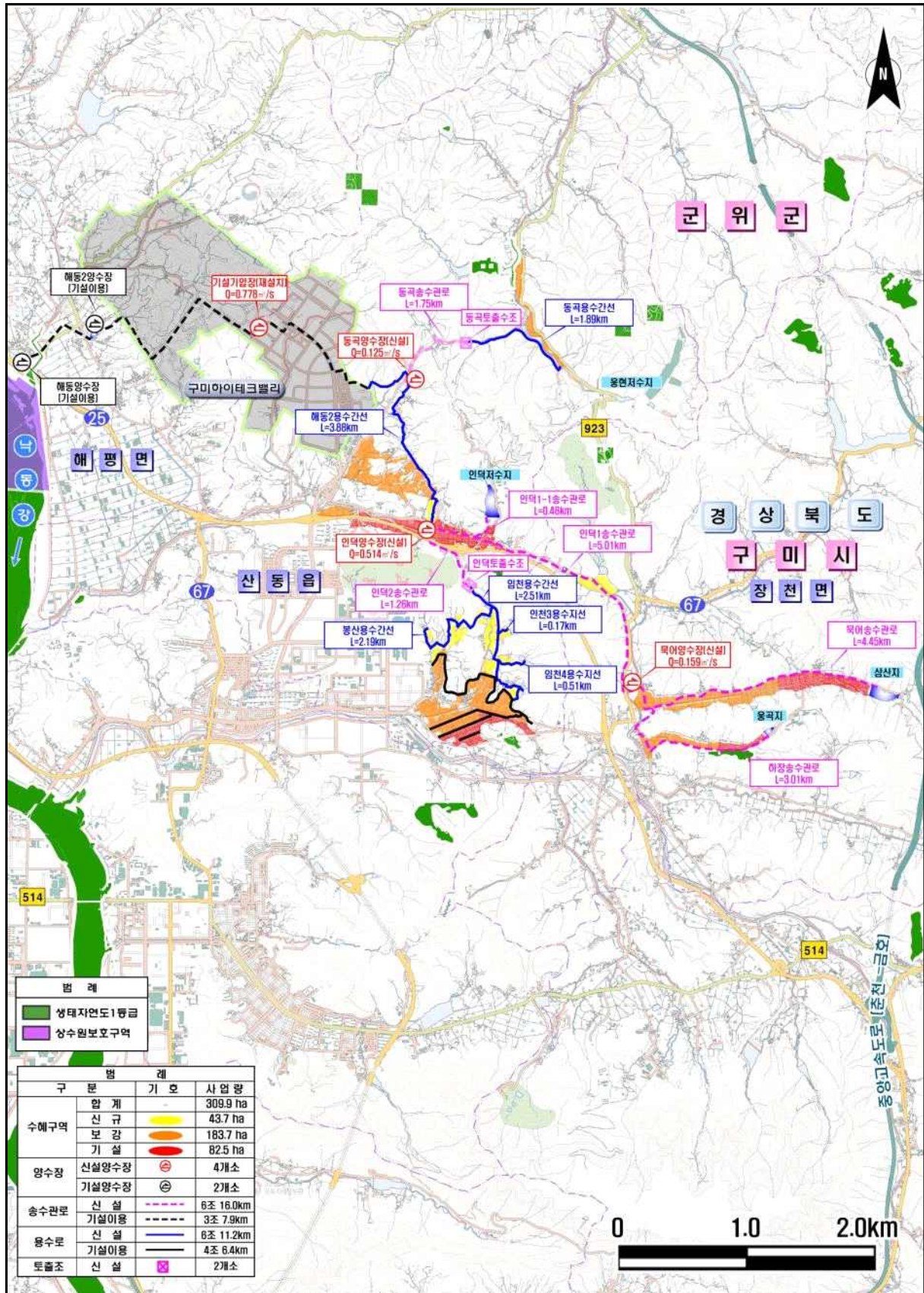
(그림 1.2-3) 계획지구 위치도(소이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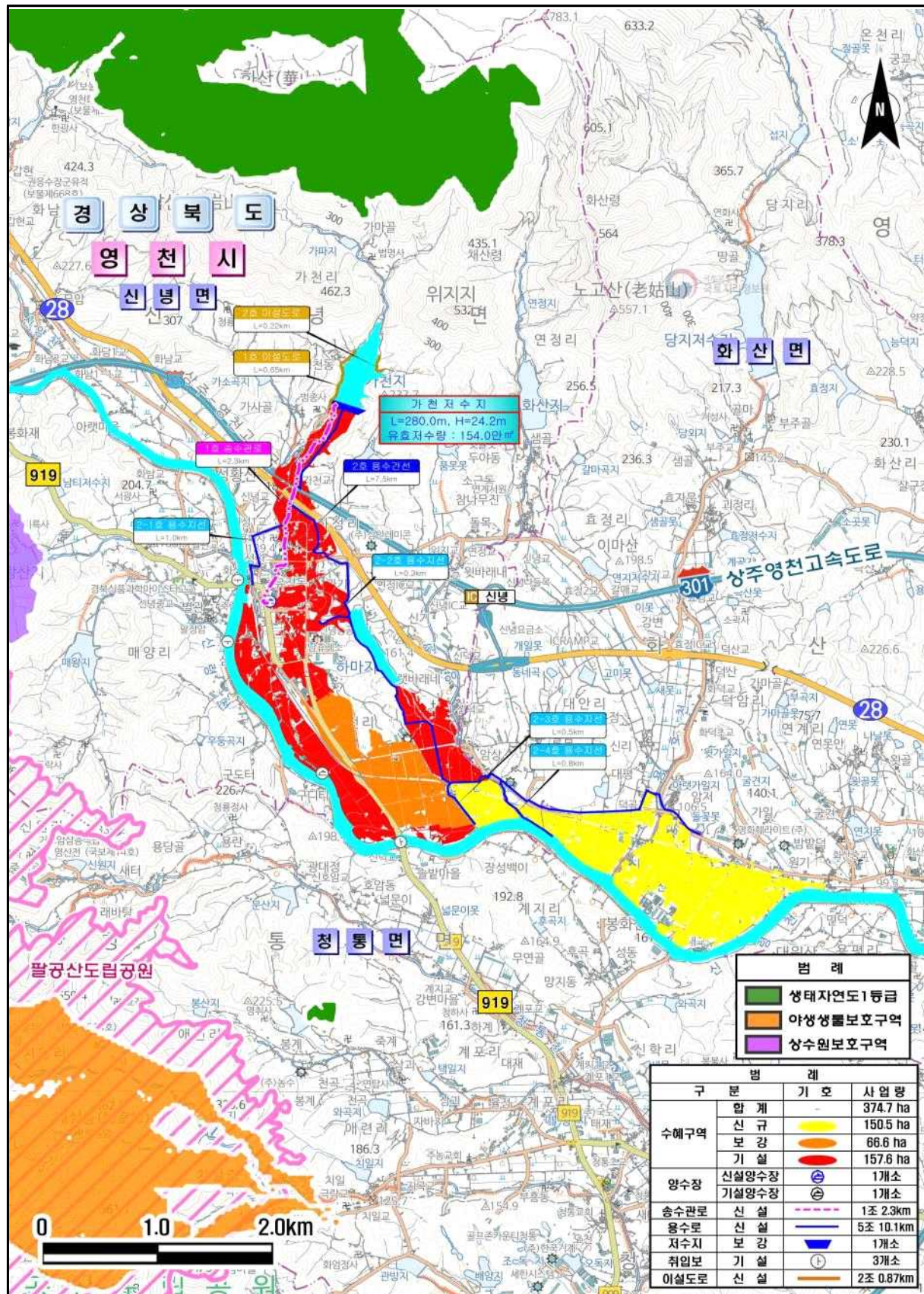
(그림 1.2-4) 계획지구 위치도(황촌이곡지구)



(그림 1.2-5) 계획지구 위치도(원송지구)



(그림 1.2-7) 계획지구 위치도(산장지구)



(그림 1.2-8) 계획지구 위치도(영화지구)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요

2.1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회의의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심 의 방 법 : 서면심의
- 심 의 일 시 : 2024. 03. 05 ~ 2024. 04. 08
- 심의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장 ○○○
- 심 의 위 원 : 협의기관(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등 32인

[표 2.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연번	구 분	대상지구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	위원장	공 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	계획수립기관
1	위 원	공 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서기관	○○○	
2	위 원	공 통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사무관	○○○	협의기관
3	위 원	황촌이곡, 원승, 금천, 산장, 영화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선임연구위원	○○○	협의기관 추천 전문가
	위 원	관동, 문당, 소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연구위원	○○○	
4	위 원	공 통	(주)서영엔지니어링 환경부	전 무	○○○	계획수립기관 위촉 전문가
5	위 원	관동, 문당, 소이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	지방 환경관서
	위 원	황촌이곡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	
	위 원	원승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 장	○○○	
	위 원	금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	
	위 원	산장, 영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 장	○○○	

[표 2.2-1] 계속

연번	구 분	대상지구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6	위 원	권돌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환경과	팀 장	○○○	관할 지자체
	위 원	문당	괴산군청 행정복지국 신속민원과	팀 장	○○○	
	위 원	소이	음성군청 경제산업국 환경과	지방환경주사	○○○	
	위 원	황촌이곡	태안군청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청소행정팀장	○○○	
	위 원	원승	완주군청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사무관	○○○	
	위 원	금천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세계유산과	주무관	○○○	
	위 원	산장	구미시청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장	○○○	
	위 원	영화	영천시청 경제환경산업국 환경보호과	과 장	○○○	
7	위 원	권돌	홍천군 내면	이 장	○○○	주민대표
	위 원	문당	괴산군 청안면	문당1리 이장	○○○	
	위 원	소이	음성군 소이면	대장2리 이장	○○○	
	위 원	황촌이곡	태안군 원북면	황촌1리 이장	○○○	
	위 원		태안군 이월면	한틀영농조합 법인감사	○○○	
	위 원	원승	완주군 화산면	회산면 이장협의회장	○○○	
	위 원	금천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추진위원장	○○○	
	위 원	산장	구미시 산동읍	산동읍 단체장 협의회장	○○○	
	위 원	영화	영천시 신녕면	화성2리 이장	○○○	
	위 원		영천시 화산면	용평리 이장	○○○	
8	위 원	공통	경북자연사랑연합	사무처장	○○○	시민단체
9	위 원	황촌이곡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전문가
	위 원	금천	전남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교 수	○○○	

제3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에 따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평가항목별 환경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저수지, 용수로, 저수조 등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요소)를 설정 하였음

[표 3.1-1] 환경보전목표(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목표(평가지표) 설정	설정 사유
I.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가뭄종합대책	○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농업용수 공급기반 부족 및 가뭄에 대한 대응능력, 가뭄발생 및 피해 현황, 물 부족량 등 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설정 및 검토 - 계획비교, 수단·방법 비교, 입지비교	○ 대안별 계획 및 입지를 비교하여 용수확보의 용이성, 환경훼손이 적은 대안 검토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중요 생물종 보전	○ 법정보호종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물 종의 서식처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 및 서식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 보호지역(수변구역, 철새도래지 등), 종다양성이 높고 우수한 지역 및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 향상이 요구되는 지역의 보전 등 적정성 평가 필요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보전	○ 1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분포시 보전을 강구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 최소화 필요

[표 3.1-1] 계속

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목표(평가지표) 설정	설정 사유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지형 변화 최소화	○ 자연성이 우수하고 학술적, 문화적, 지질학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천연기념물, 화석 등)의 보전 및 고려 평가 필요
	○ 생태축 보전	○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녹지축 보전 및 훼손지역의 연결 평가 필요
3. 자연경관	○ 경관 변화 최소화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경관에의 영향 평가 필요 -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의 대상이 되는 자연경관의 질적 저하 및 훼손의 가능성
4. 수환경 보전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준수	○ 목표기준 준수 및 계획 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 최소화 필요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여부
	○ 저수지(저류지) 수질 변화 및 유지·관리	○ 저수지(저류지) 수질·수량 변화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 적정성 평가 필요
	○ 물수지 분석	○ 유역 수자원의 유출·수요량 계산, 수리시설 규모 적정성 평가 필요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	○ 환경기준 유지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필요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평가 필요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자원의 재활용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검토 필요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 검토 필요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변화 최소화	○ 기본계획 검토, 시설물 계획 등 토지이용상의 변화 최소화 ○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평가 필요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4.1 대상지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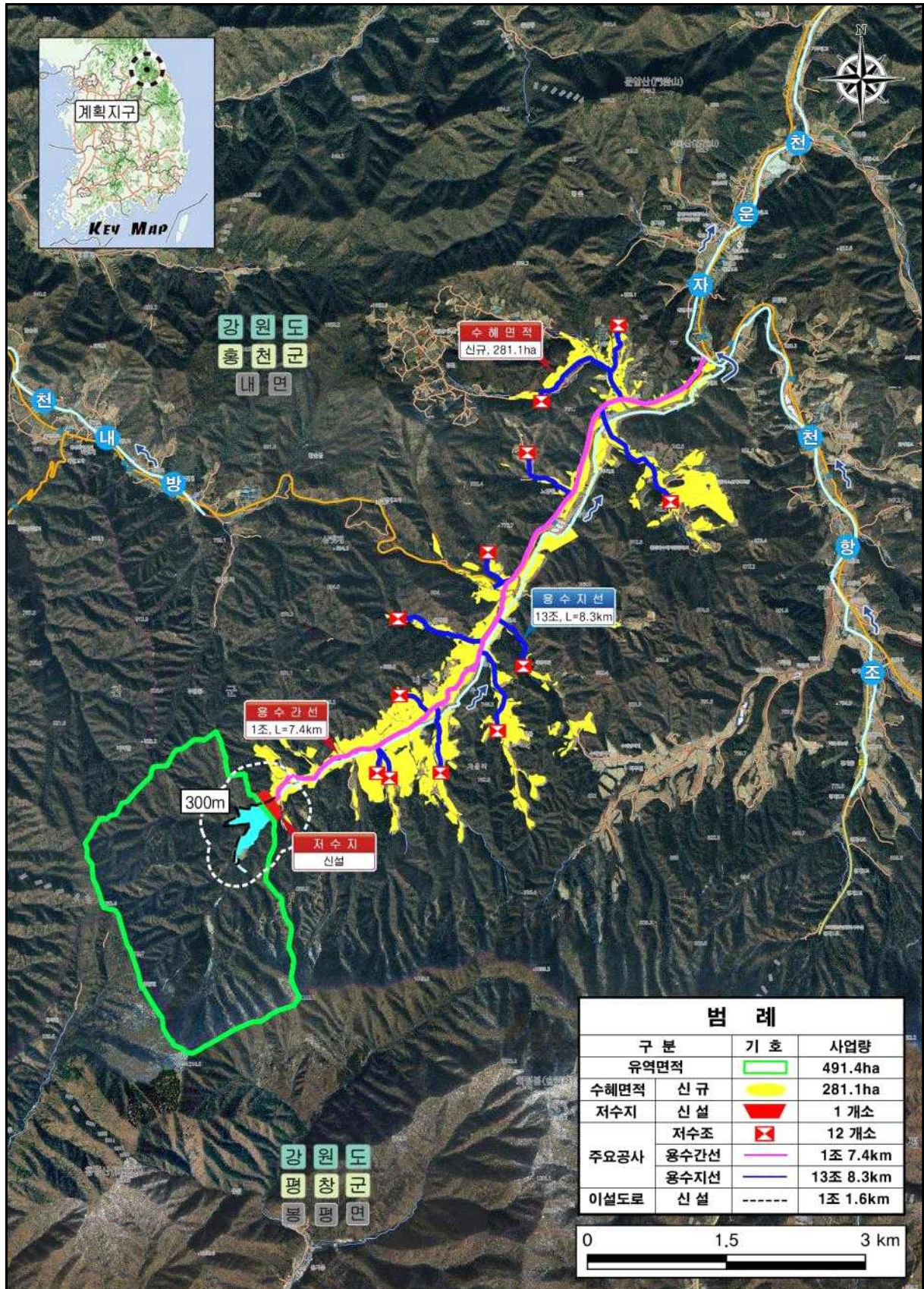
-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범위는 계획의 특성, 주변 환경현황, 직·간접적인 영향권, 장·단기적 영향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표 4.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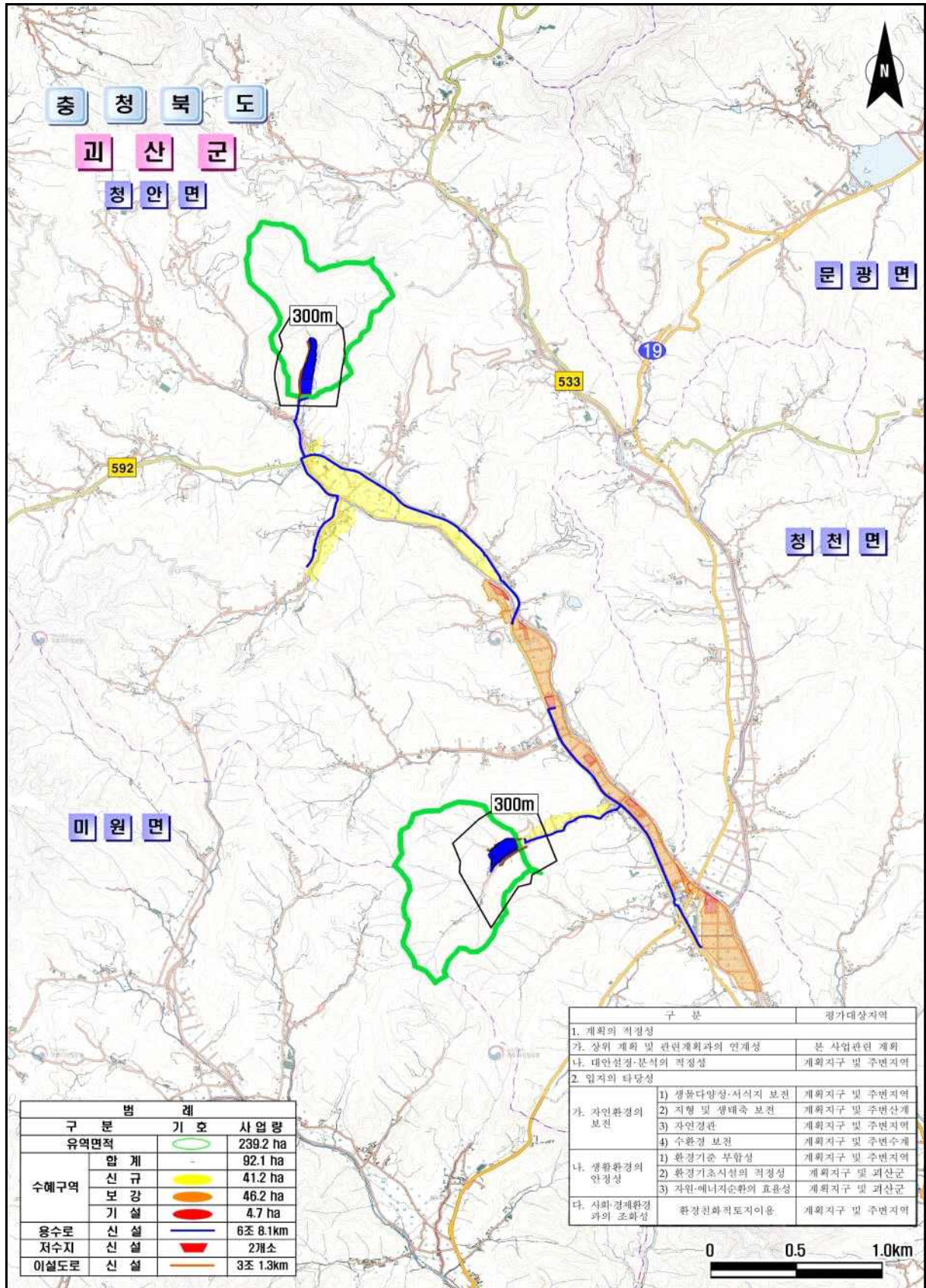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 및 사유	평가 대상지역
I.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 본 사업관련 계획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등 대안별 비교·분석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01, 환경부」에 따른 분류군별 조사범위 고려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식물상 및 식생 150m, 육상동물상 150~500m, 육수생태계 100~500m)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산계
3. 자연경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4. 수환경 보전	○ 계획지구 주변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해 하류수계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수리·수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표 4.1-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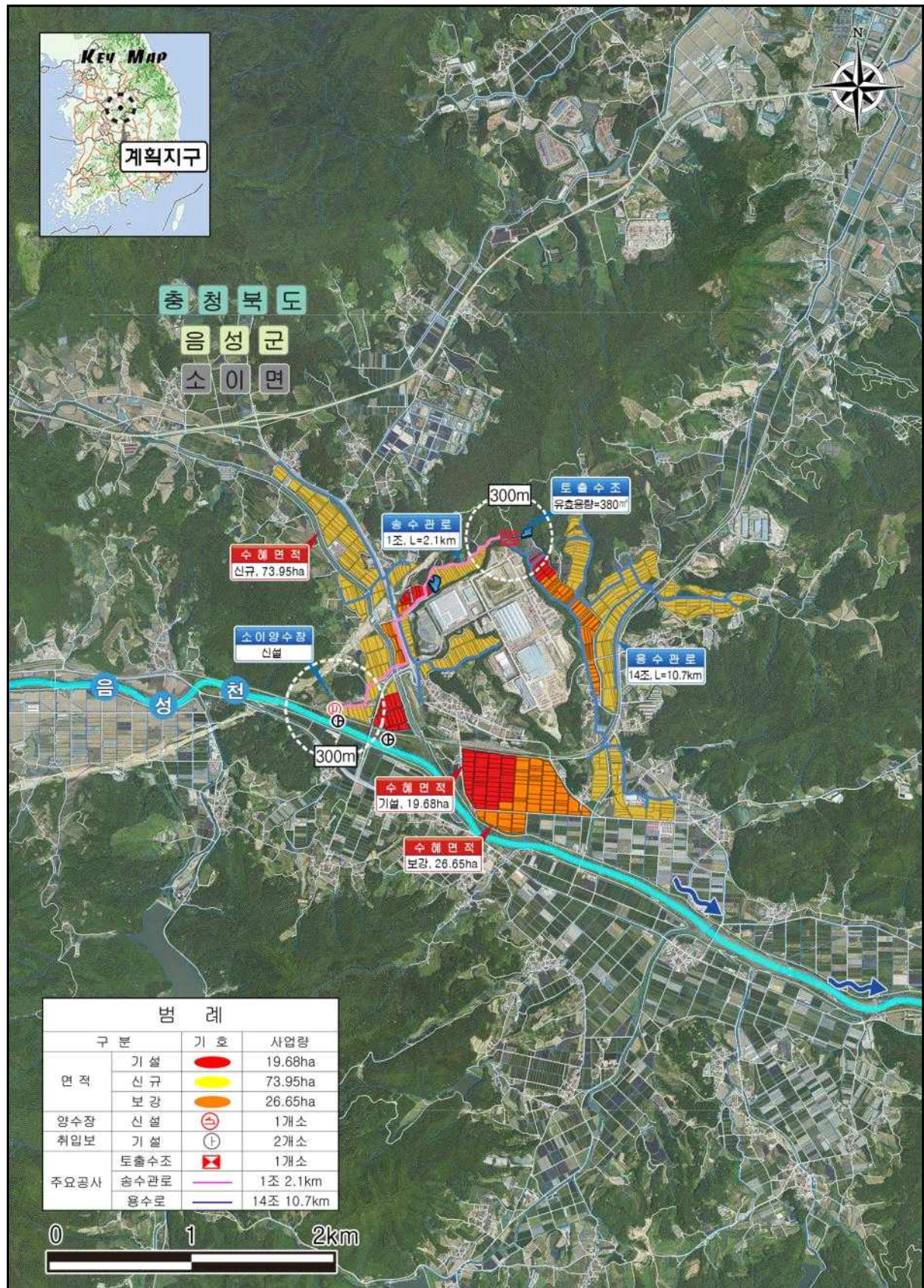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 및 사유	평가 대상지역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대기질 및 소음·진동 300m 이내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규모의 적정성 검토	○ 계획지구 및 해당 지자체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폐자원 발생 및 지자체 처리계획 검토 ○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 계획지구 및 해당 지자체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해 지역, 입지제한사항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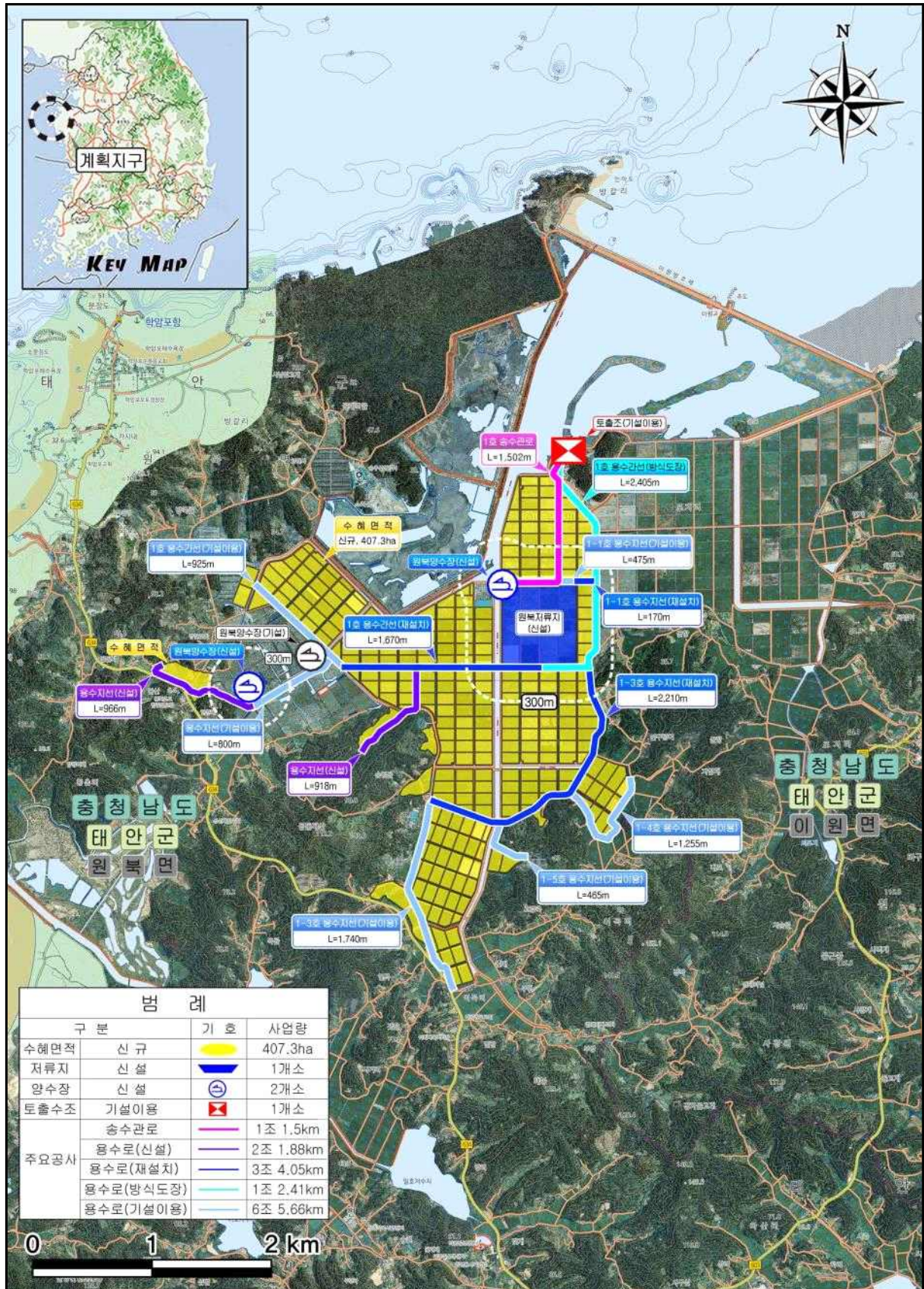
(그림 4.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권들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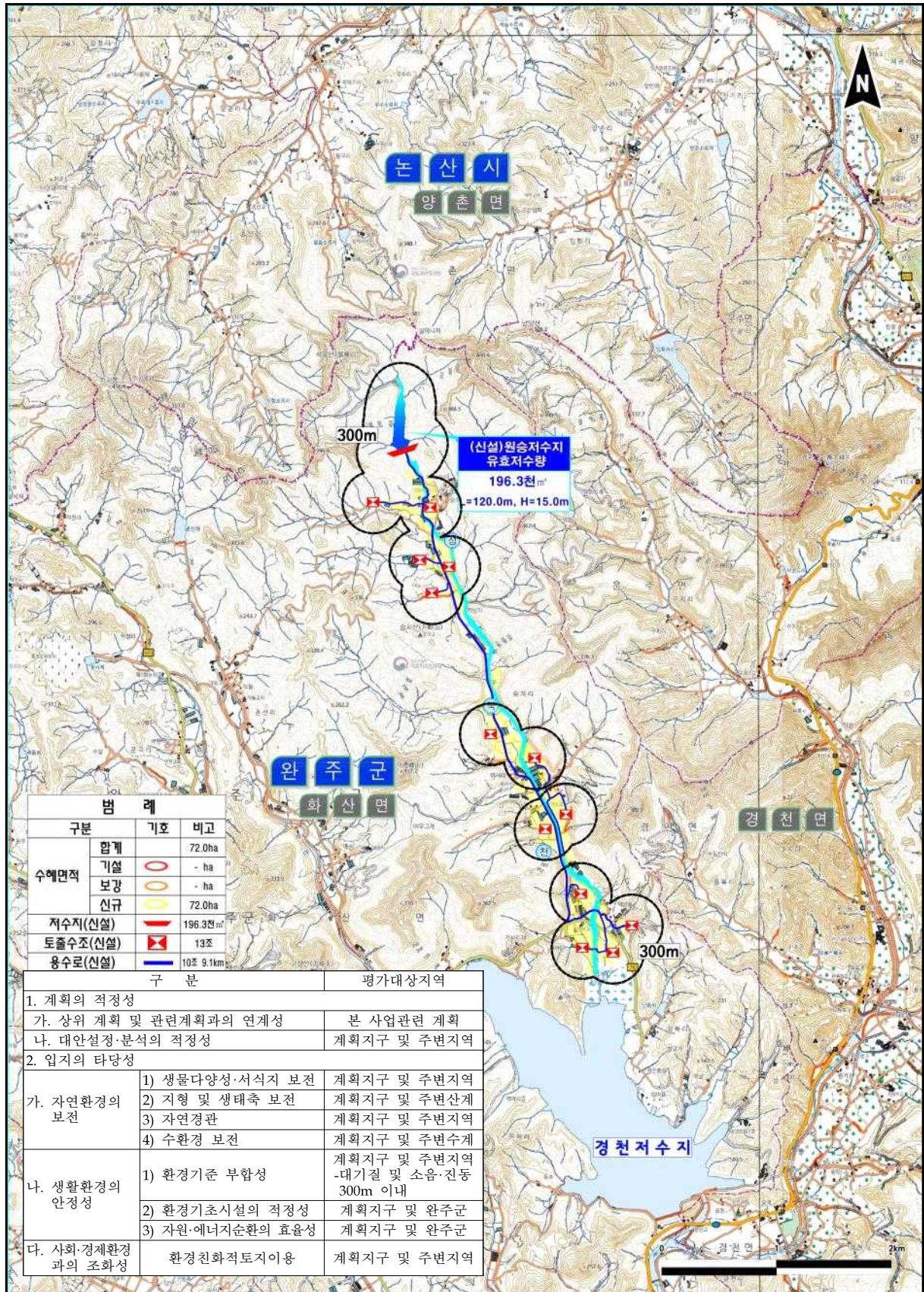
(그림 4.1-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문당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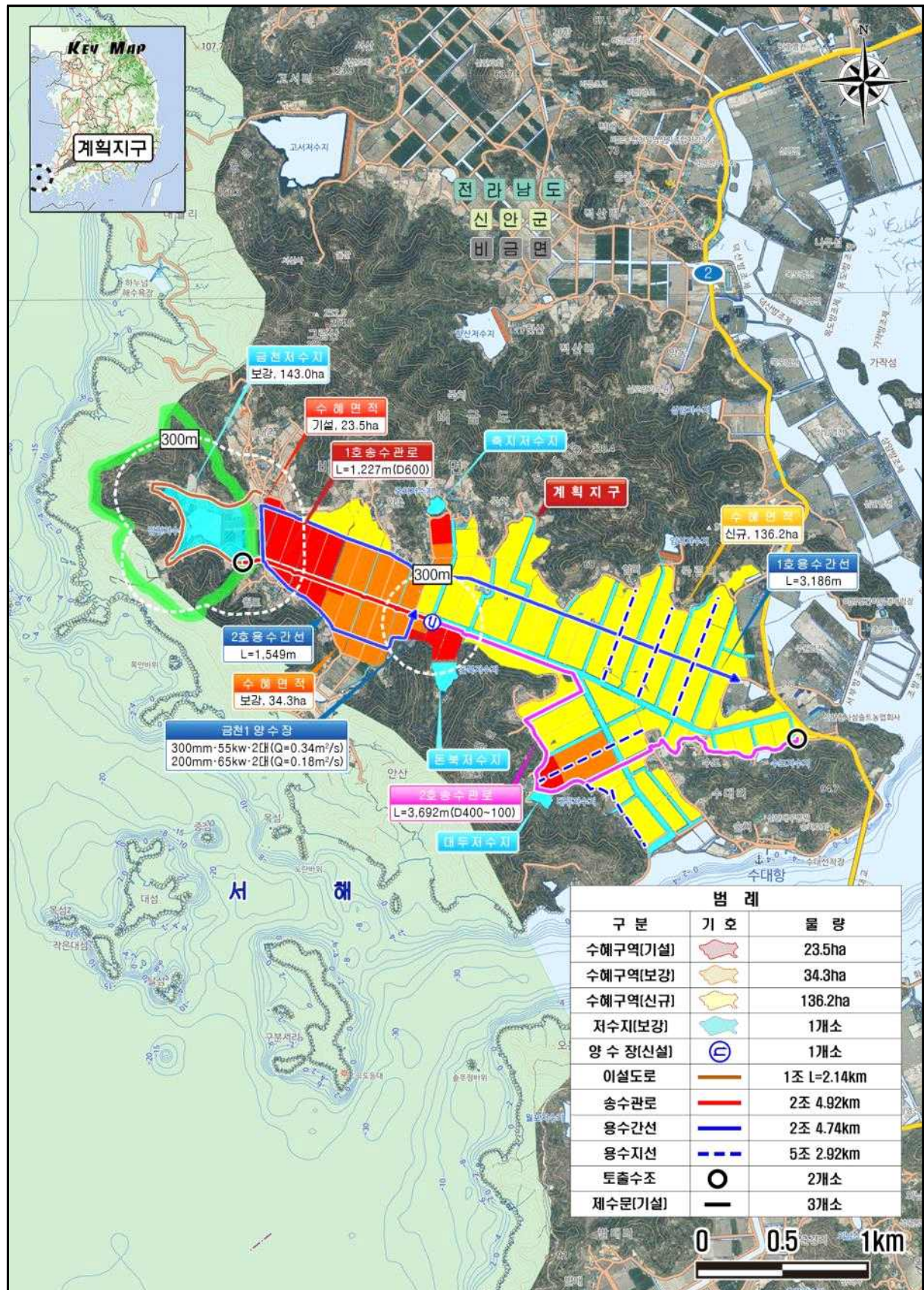
(그림 4.1-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소이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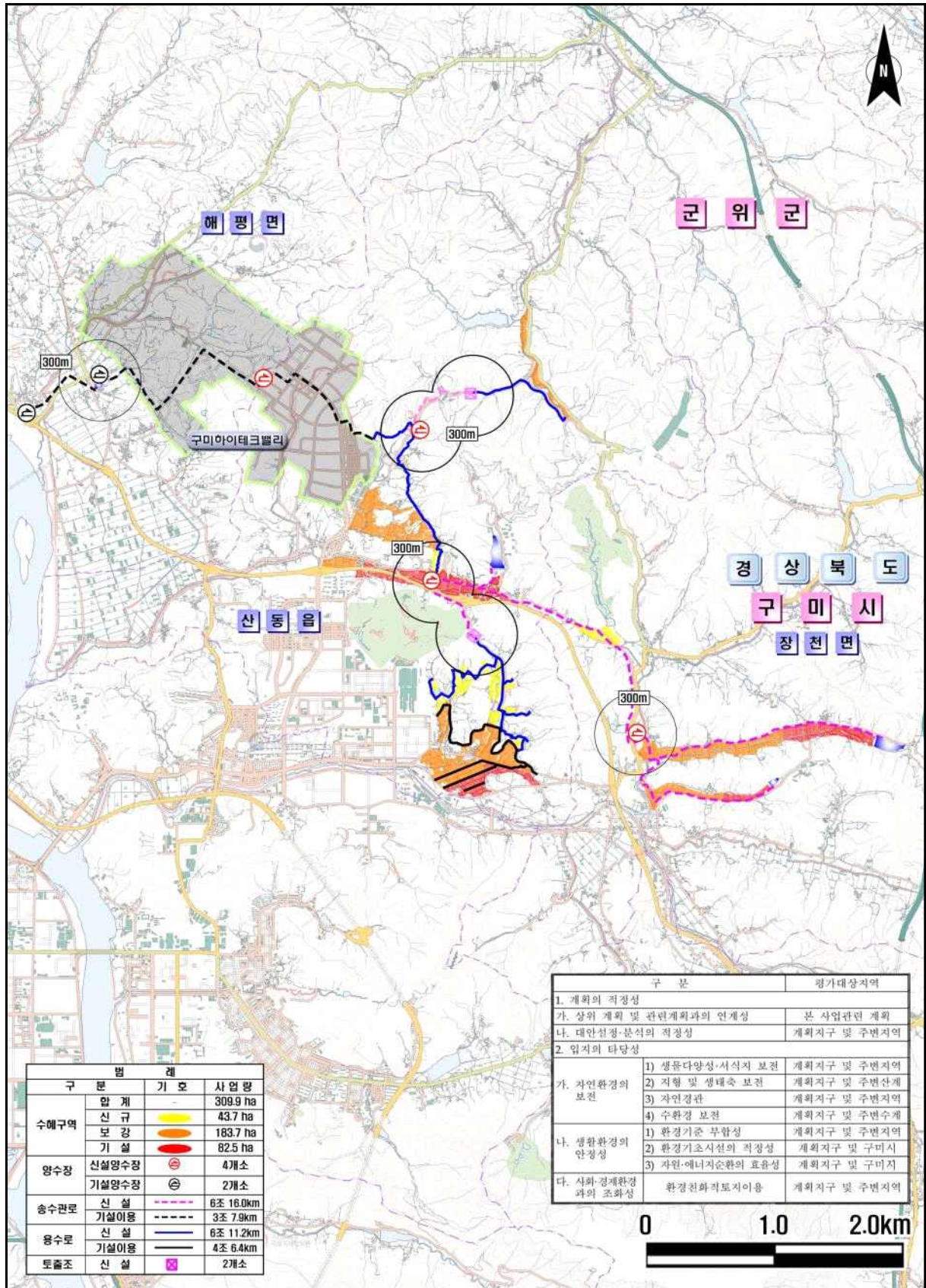
(그림 4.1-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황촌이곡지구)



(그림 4.1-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원승지구)



(그림 4.1-6)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금천지구)



(그림 4.1-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산장지구)



(그림 4.1-8)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영화지구)

4.2 대안의 설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02, 환경부」 등에 제시된 개발기본계획의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계획 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시기·순서, 입지, 기타 등이 있음
-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였으며, 대안의 종류 중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에 따른 대안을 선정하였음

[표 4.2-1] 대안의 채택 및 제외

대안종류	대안채택	대안제외	사 유
계획 비교	○	-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비교하여 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수단·방법	○	-	○ 시설물 등의 계획 수립시 수해지역의 용수확보의 용이성, 환경훼손 등을 고려한 비교·검토 필요
수요·공급	-	○	○ 10년 빈도 이상의 가뭄 상습지역 중 수해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요 대비 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획이 아님
시기·순서	-	○	○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에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님
입 지	○	-	○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되는 저수지 및 이설도로 등의 위치 선정에 따른 지형조건, 취수조건, 지질조건 등을 고려한 비교·검토 필요
기 타	-	○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 대안 제시 및 요구시 반영

[표 4.2-1] 대안의 채택 및 제외

대안종류	평가영역 및 대안선정 방법
계획 비교	○ 토지이용 및 수자원 이용측면 비교 ○ 각종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생태계 훼손 가능성 ○ 지형의 훼손 및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수단·방법	○ 저수지, 양수장, 토출수조, 송수관로, 용수로 등 계획수립시 수해지역의 용수확보 용이성, 환경훼손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
입 지	○ 저수지, 양수장, 토출수조, 송수관로, 용수로 등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4.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4.3.1 평가항목

○ 다목적농촌융수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4.3-1] 평가항목 선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중점 평가	현황 조사	제외 항목	사 유
I.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 여부 파악 필요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	-	○ 계획 비교 등 대안별 비교·분석 필요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	○ 각종 보호지역 영향 및 동·식물 서식지와 다양성 변화, 보호생물종 영향 평가 필요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요 산림축의 훼손, 지형 및 생태축 단절 여부 등 검토 필요
	3) 자연경관의 보전	○	-	-	○ 계획시행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 경관 영향 평가 필요
	4) 수환경의 보전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및 보호지역에 직·간접적 영향 평가 필요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	-	○ 국가, 지역 환경기준 등의 유지달성 평가 필요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	○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및 기초시설 공급 필요 여부 파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중립 평가 필요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해지역, 입지 제한사항 검토 필요

4.3.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본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4.3-2]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 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 방법	
I.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계획의 수립 기간	문헌조사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지자체 ○ 내용적 범위 : 작성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 조사방법 : 관련계획 문헌 구성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평가 대상 지역	대안별 평가 지표	계획의 수립 기간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내용적 범위 : 대안 선정 항목 ○ 시간적 범위 : 대안 선정 기간 ○ 조사방법 : 관련계획 문헌 구성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최근 10년간	국가DB, 문헌조사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내용적 범위 : 작성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 조사방법 : 관련자료 문헌 구성, 계획지구 현황과악 - 면적지역(저수지 등) : 현지조사 - 선형지역(용수로 등) : 문헌조사
			육상· 수생태계 (법정 보호종), 동계조류 조사	총 2회	현지조사 (탐문조사 포함)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최근 5년간	문헌조사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내용적 범위 : 작성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 조사방법 : 관련자료 문헌 구성, 계획지구 현황과악
				-	현지조사	

[표 4.3-2] 계속

설정된 평가항목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사 유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 방법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3) 자연경관의 보전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계획의 수립 기간	문헌조사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지자체 ○ 내용적 범위 : 작성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 조사방법 : 관련자료 문헌 구성, 계획지구 현황파악
	4) 수환경의 보전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계획의 수립 기간	문헌조사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 내용적 범위 : 작성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수질 환경기준 항목	총 1회	현지조사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 조사방법 : 관련자료 문헌 구성, 계획지구 주변 수계 현황파악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계획의 수립 기간	문헌조사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환경기준 항목				총 1회	현지조사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계획의 수립 기간	문헌조사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내용적 범위 : 작성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 조사방법 : 관련자료 문헌 구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계획의 수립 기간	문헌조사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내용적 범위 : 작성규정 [별표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 ○ 시간적 범위 : 계획의 수립기간 ○ 조사방법 : 관련자료 문헌 구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평가 대상 지역	[표 4.3-3] 참조	계획의 수립 기간	문헌조사

[표 4.3-3]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항목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현황조사 항목
I.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농어촌정비 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 농어촌융수이용 합리화 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군환경계획, 가뭄종합대책 등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국가DB - 생태계우수등급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2등급 지역 등 ○ 문헌조사 -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 육상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 현황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군락, 천연기념물, 희귀종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 - 수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 ○ 현지(탐문조사 포함) 조사 - 육상·수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문헌조사 - 지형 유형 : 산지, 구릉지, 하천, 해안 등 - 특이한 지형 : 계곡, 협곡 등 - 지형형상 : 표고, 경사도, 산줄기 등 - 지반 : 지반 불안정지역, 연약지역, 연안침식 우려지역 등 - 지형보전 등급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능선·계곡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 - 국가 핵심생태축 : 4대 핵심 생태축 중 도서연안, 5대강 수생태축 등 - 광역생태축 - 도시연결 생태축 : 도시·군기본계획 상의 보전축 - 백두대간, 정맥 및 지맥 등의 산림축 -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주요 산림 생태축, 수변생태축 ○ 현지조사 - 지형 형상 : 표고, 경사도, 산줄기 등 - 지반 : 지반 불안정지역, 연약지역 등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능선·계곡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

[표 4.3-3] 계속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현황조사 항목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3) 자연경관의 보전	○ 문헌조사 - 자연경관 보전 용도지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자연·수변경관지구 등 -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하천, 계곡, 호소 등 -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 주요경관 자원 : 경승지, 폭포,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기암석, 사적, 사구, 역사·문화 자원 등 ○ 현지조사 - 주요 조망점(도로, 등산로, 전망대, 시가지 등) 및 조망상황 -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4) 수환경의 보전	○ 문헌조사 - 현황 : 수계 및 저수지, 지하수 이용,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총량관리, 비점오염원 - 물환경 보호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어촌 용수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 현지조사 - 수계 및 지표수질 현황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국가DB - 기상 현황 ○ 문헌조사 - 대기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현황 -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및 현황 - 환경오염 심화지역 또는 환경오염 심화 예상 지역 등 ○ 현지조사 - 정온시설 및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조사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문헌조사 - 환경기초시설 현황 - 기초시설 공급여부 파악 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문헌조사 - 폐기물 발생량 및 폐자원 등의 재활용 계획 - 저탄소 장비 및 자재 사용 등 자원·에너지 순환계획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문헌조사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중 토지이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

4.3.3 평가방법

○ 본 계획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4.3-4] 평가방법 설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평가방법의 설정 및 사유
I.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 시·군 환경계획, 가뭄종합대책 등	○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농어촌 정비법)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관련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평가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설정 및 검토 - 계획 비교, 수단·방법 비교, 입지 비교	○ 자연·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정책 계획과의 부합성, 용수확보의 용이성 등 대안 평가 ○ 기본계획 자료 통합 분석
II.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중요 생물종 보전 ○ 생물 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물종 및 서식처 영향 평가 ○ 계획시행 전·후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가능 여부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지형변화 최소화 ○ 생태축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지형 변화, 생태축 영향 평가 ○ GIS 분석 등
	3) 자연경관의 보전	○ 경관변화 최소화	○ 계획시행 전·후의 경관 영향 평가
	4) 수환경의 보전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준수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 저수지 수질 변화 및 유지·관리 ○ 물수지 분석 ○ 환경기준의 유지	○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질·수량, 유지 관리계획 수립 등 적정성 영향 평가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여부 ○ 수리·수문 변화 및 영향 검토 ○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준 유지 달성 및 오염배출원 관리 평가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공사장비 투입 최소화	○ 오염배출원 관리 평가 ○ 오염배출량 파악 후 환경기준 유지 가능 여부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 규모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자원의 재이용 ○ 탄소중립	○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영향 평가 및 자원의 재이용 ○ 저탄소 장비 및 자재 사용, 건설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변화 최소화	○ 계획수립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 파악

4.3.4 항목별 현황조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가. 현지조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현지조사 평가항목별 조사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

[표 4.3-5] 평가항목 조사계획(현지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횟수	조사지점
동·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 육수동·식물상(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식생보전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총 2회 (황촌이곡 및 원송지구 동계조류 조사 포함)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식물상 및 식생 150m, 육상동물상 150~500m, 육수생태계 100~500m)
환경질	대기질	○ (6개 항목) PM-10, PM-2.5, NO ₂ , CO, O ₃ , SO ₂	1회	○ 권돌지구 : 2지점 ○ 문당지구 : 2지점 ○ 소이지구 : 2지점 ○ 황촌이곡지구 : 2지점 ○ 원송지구 : 2지점 ○ 금천지구 : 2지점 ○ 산장지구 : 4지점 ○ 영화지구 : 2지점
	지표수질	○ (22개 항목) 유량, 수온, pH, DO, BOD, COD, TOC, SS, T-N, T-P, Chl-a, 총대장균군, Cd, As, CN, Hg, 유기인, PCBs, Pb, Cr ⁶⁺ , PCE, EC	1회	○ 권돌지구 : 2지점 ○ 문당지구 : 3지점 ○ 소이지구 : 2지점 ○ 황촌이곡지구 : 2지점 ○ 원송지구 : 2지점 ○ 금천지구 : 2지점 ○ 산장지구 : 3지점 ○ 영화지구 : 3지점
	토양	○ (15개 항목)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s, CN, 페놀, BTEX, TPH	1회	○ 권돌지구 : 1지점 ○ 문당지구 : 1지점 ○ 소이지구 : 2지점 ○ 황촌이곡지구 : 3지점 ○ 원송지구 : 2지점 ○ 금천지구 : 2지점 ○ 산장지구 : 4지점 ○ 영화지구 : 2지점
	소음·진동	○ 등가소음도(주간 4회, 야간 2회) ○ 진동레벨(주간 2회, 야간 1회)	1회	○ 권돌지구 : 3지점 ○ 문당지구 : 3지점 ○ 소이지구 : 2지점 ○ 황촌이곡지구 : 2지점 ○ 원송지구 : 3지점 ○ 금천지구 : 2지점 ○ 산장지구 : 4지점 ○ 영화지구 : 3지점

나. 문헌조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료조사는 국가DB, 공간정보, 유사사례 조사, 주변 개발사업 및 계획된 사업의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료를 인용할 계획임

4.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4.4.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조항
행정계획의 구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 평가준비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 평가대상지역 설정, 지역개발, 평가항목, 범위, 방법 설정 - 주민의견 수렴 방안	시행규칙 제2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Scoping)	○ 기능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결정 ○ 심의방법 : 회의/서면(회의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간 : 최대 30일(평가준비서 보완기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	법 제8,11조 시행령 제4,5,9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Scoping)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 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계획수립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 주민 등이 의견제출시 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 수록	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반영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초안에 반영	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설명회, 관계행정기관 협의	○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협의기관, 승인기관, 관할 도지사, 관할지역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의견제출기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초안 제출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공람기간 20~40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고·공람내용, 초안요약문 : 계획수립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 설명회 개최(초안의 공람기간 내) :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	법 제12,13,14조 시행령 제12,13,15조
↓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 의견수렴 결과/반영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이전에 계획수립 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	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시행령 제21조제1항 내용 반영	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		
협의요청	○ 관계행정기관 → 협의기관 ○ 필요시 보완서 작성(보완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	법 제16,17조 시행령 제22,23,24조
↓		
협의의견 통보	○ 협의기관 → 관계행정기관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 부득이한 경우 40일 - 보완에 걸린시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시행령 제25조
↓		
협의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 관계행정기관 → 협의기관 ○ 조치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법 제19조 시행령 제26조

4.4.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개할 계획임

나.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1) 의견수렴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의견수렴 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공휴일, 토요일 제외)

나)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 게시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첨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첨부

다) 설명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개최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의 세부 계획은 추후 해당 지자체(홍천군)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임
-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라) 공청회 개최

- 주민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임

[표 4.4-1] 공청회 개최요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협의 요청 전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표 4.4-2]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